# 부산시청 중앙하이츠 오피스텔 분양 광고(안)

◆ 본 분양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와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광고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당사 홍보관 내 분양 상담 전화 (1811~7566)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관 운영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부산시청역 중앙하이츠는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 홍보관(http://www.부산시청역중앙하이츠.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본 사이버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부산시청역중앙하이츠.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방역 운영 방안을 준수하여야만 홍보관 관람이 가능하오니, 내방 시 아래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확인 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장치의 불용한 경우
◆ 기타 홍보관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홍보관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홍보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 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본청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 광고일(2021.11.05.) 기준입니다.

**■ 청약 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 사항 :** 1인당 1건씩 청약 신청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자 전부가 무효 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은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전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시행-건축과-66069호로 분양신고 필

◆ 본 건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 허가-988호 (2020.10.20))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관리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거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합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45~6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1,457.20㎡

**■ 공급 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20층(건물 높이: 63.60M)

**■ 연면적 :** 전체건축물 연면적 15,230.25㎡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7,272.37㎡

**■ 공급 대지 용도지역/지구 현황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 보호구역, 일반경관지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 지진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계수(I) | 내진설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반응수정계수(R) |
|---|---|---|---|---|---|
| 0.11 | S4 | 2.0 | C | 중요도 1 | 4.0 |

■ 공급 규모 및 내역: 지하 2층, 지상 20층(건물 높이: 63.60M) 1개 동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95호실

**■ 건축물의 층별용도**

| 구분 | 용도 |
|---|---|
| 지하2층 ~ 지하1층 |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주차장+기계주차, 통신실 |
| 지상1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게단실+감시제어만실, 지상1층 |
| 지상2층 ~ 20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 공급 대상 및 면적**

| 구분 | TYPE | 호실별 공급면적(㎡) | | | | | |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계 | 기타공면적(주차장포함) | 합계 | | | |
| 업무시설(오피스텔) | A | 76.12 | 44.43 | 19.49 | 63.92 | 12.20 | 76.12 | 7.26 | 38 |
| | B | 90.34 | 53.29 | 22.43 | 75.72 | 14.62 | 90.34 | 8.71 | 38 |
| | C | 49.84 | 28.71 | 13.25 | 41.96 | 7.88 | 49.84 | 4.68 | 18 |
| | C' | 49.77 | 28.71 | 13.25 | 41.96 | 7.81 | 49.77 | 4.68 | 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 면적별 | 총 별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 계 | 계약금 (10%) | 중도금 50% | | | | | 잔금 (40%) 입주시 |
|---|---|---|---|---|---|---|---|---|---|---|---|---|
| | | | | |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
| 44,43㎡ (A형) | 2~5층 | 83,684,000 | 204,144,000 | 20,414,400 | 308,242,40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123,296,960 |
| | 6~8층 | 83,684,000 | 205,296,000 | 20,529,600 | 309,509,60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123,803,840 |
| | 9~12층 | 83,684,000 | 207,598,000 | 20,759,800 | 312,041,80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124,816,720 |
| | 13~16층 | 83,684,000 | 209,440,000 | 20,944,000 | 314,068,0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125,627,200 |
| | 17~20층 | 83,684,000 | 211,052,000 | 21,105,200 | 315,841,20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126,336,480 |
| 53,29㎡ (B형) | 2~5층 | 100,372,000 | 241,226,000 | 24,122,600 | 365,720,600 | 36,572,060 | 36,572,060 | 36,572,060 | 36,572,060 | 36,572,060 | 36,572,060 | 146,288,240 |
| | 6~8층 | 100,372,000 | 242,904,000 | 24,259,200 | 367,223,200 | 36,722,320 | 36,722,320 | 36,722,320 | 36,722,320 | 36,722,320 | 36,722,320 | 146,889,280 |
| | 9~12층 | 100,372,000 | 245,327,000 | 24,532,500 | 370,235,500 | 37,022,950 | 37,022,950 | 37,022,950 | 37,022,950 | 37,022,950 | 37,022,950 | 148,091,800 |
| | 13~16층 | 100,372,000 | 247,511,000 | 24,751,100 | 372,634,100 | 37,263,410 | 37,263,410 | 37,263,410 | 37,263,410 | 37,263,410 | 37,263,410 | 149,053,640 |
| | 17~20층 | 100,372,000 | 249,424,000 | 24,942,400 | 374,738,400 | 37,473,840 | 37,473,840 | 37,473,840 | 37,473,840 | 37,473,840 | 37,473,840 | 149,895,360 |
| 28,71㎡ (C,C'형) | 2~5층 | 54,076,000 | 134,382,000 | 13,438,200 | 201,896,200 | 20,189,620 | 20,189,620 | 20,189,620 | 20,189,620 | 20,189,620 | 20,189,620 | 80,758,480 |
| | 6~8층 | 54,076,000 | 135,136,000 | 13,513,600 | 202,725,600 | 20,272,560 | 20,272,560 | 20,272,560 | 20,272,560 | 20,272,560 | 20,272,560 | 81,090,240 |
| | 9~12층 | 54,076,000 | 136,643,000 | 13,664,300 | 204,383,300 | 20,438,330 | 20,438,330 | 20,438,330 | 20,438,330 | 20,438,330 | 20,438,330 | 81,753,320 |
| | 13~16층 | 54,076,000 | 137,850,000 | 13,785,000 | 205,711,000 | 20,571,100 | 20,571,100 | 20,571,100 | 20,571,100 | 20,571,100 | 20,571,100 | 82,284,400 |
| | 17~20층 | 54,076,000 | 138,905,000 | 13,890,500 | 206,871,500 | 20,687,150 | 20,687,150 | 20,687,150 | 20,687,150 | 20,687,150 | 20,687,150 | 82,748,600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 면적별 | 총 별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 계 | 계약금 (10%) | 중도금 50% | | | | | 잔금 (40%) 입주시 |
|---|---|---|---|---|---|---|---|---|---|---|---|---|
| | | | | |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
| 업무시설(오피스텔) 추가사항 | 2~5층 | 83,684,000 | 204,144,000 | 20,414,400 | 308,242,40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30,824,240 | 123,296,960 |
| | 6~8층 | 83,684,000 | 205,296,000 | 20,529,600 | 309,509,60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30,950,960 | 123,803,840 |
| | 9~12층 | 83,684,000 | 207,598,000 | 20,759,800 | 312,041,80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31,204,180 | 124,816,720 |
| | 13~16층 | 83,684,000 | 209,440,000 | 20,944,000 | 314,068,0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31,406,800 | 125,627,200 |
| | 17~20층 | 83,684,000 | 211,052,000 | 21,105,200 | 315,841,20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31,584,120 | 126,336,480 |

◆ 청약 신청 시 사업주체에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 사항으로 신청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시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급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급 계좌 오류 및 환급 불가 계좌일 경우 청약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신청시 | ■ 공공신청서홈페이 또는 은행창구 비치)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방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
| 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에게 무효 처리 및, 비속 포함)과 간주하여 상위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사항을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민감증명 발급 / 본인사생확인 발급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동도 · 주택분양신청의 경우 서면 기재)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주택 분양 관련서의 증명서명증명서에서 이에 관련 공증증서 ② 청약자의 인감증명(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한 서명으로 공증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③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① 청약자 자필 사생한 위임장본인사생자필서식 상의 서명) 1통 ② 청약자의 본인사생사실확인서 1통 ③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대리인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 법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에무효 처리 및, 비속 포함)과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사항을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공공신청서홈페이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방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제3자동의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분 | 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분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일 이후 11월 26일 이내 환불한다.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청약 접수 시 입력하신 계좌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 주체는 중도금 납부 일정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유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은행은 위탁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하고, 계약자는 위탁사가 통보한 기한 전까지 계약자의 명의로 한 전기계 계약자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 지도록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해약 후 환불금이 있을 경우. 별도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보증금등기 및 소유 권이전등기는 준공일과 분양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 분부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건축물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저의 차 등은 실물 확인 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조감도, 단지 모형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색상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상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에 대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주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앙 간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자재는 부품 및 시공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자재가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등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성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경사로, 성토, 목 조경 및 식재 계획, 포장 패턴,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사용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동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마감 재료 및 패턴디자인, 단지로고 사인물, 옥탑 장식물, 물탱,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외부 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정, 드라이어에어컨(A, 조경폐쇄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현재,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상침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상침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 차이 극복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조경석 혹은 옹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여부에 따라 레벨 또는 석질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원만 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부지는 마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마술작품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 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오피스텔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장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인근에 예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와 업무시설(오피스텔)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주차장, 관리실 등)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비 등은 통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난방 및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협의 과정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형태 및 크기는 계획상 진입방식,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일부 등(라인별 개폐장치, 엘리베이터, 차량 접근로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침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 마감은 지정도장 마감이며 재질부 일부에 외벽 마감은 알루미늄 판넬로 시공 예정으로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주체와 협의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 패턴과 단지 외부 도로 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 자문과 교통성 검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실, 경비실 등)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은 고 소음 및 시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세재 및 옥외시설물, 단지로고 사인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라인)의 지층부 주변에 황폐 (DA 환기장치)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 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건축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라인) 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층 세대 및 인접 세대는 공개공지, 대중 교통이용객의 휴식 공간, 버스정류장, 인접 건물 등에 따라 소음, 흡연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둥, 상등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배수 시설 설치 및 구조물 구조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지층 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자주식 30대, 기계식 148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동행로 구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차량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입 등 인 · 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지하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에 대해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 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3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 차량 및 트럭 등의 높은 차량은 지하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고,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 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동(라인)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 환기용 그릴 또는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부 구조물(기둥,슬래브,벽기둥 및 채광창 등)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 상황 및 기반 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 기관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성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경사로, 성토, 목 조경 및 식재 계획, 포장 패턴,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사용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동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마감 재료 및 패턴디자인, 단지로고 사인물, 옥탑 장식물, 물탱,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외부 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정, 드라이에어컨(A, 조경폐쇄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현재,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상침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상침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 차이 극복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조경석 혹은 옹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여부에 따라 레벨 또는 석질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원만 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부지는 마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마술작품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 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오피스텔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장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인근에 예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와 업무시설(오피스텔)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주차장, 관리실 등)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비 등은 통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난방 및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협의 과정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형태 및 크기는 계획상 진입방식,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일부 등(라인별 개폐장치, 엘리베이터, 차량 접근로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 마감은 지정도장 마감이며 재질부 일부에 외벽 마감은 알루미늄 판넬로 시공 예정으로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주체와 협의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 패턴과 단지 외부 도로 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 자문과 교통성 검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실, 경비실 등)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은 고 소음 및 시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세재 및 옥외시설물, 단지로고 사인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라인)의 지층부 주변에 황폐 (DA 환기장치)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 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건축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라인) 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층 세대 및 인접 세대는 공개공지, 대중 교통이용객의 휴식 공간, 버스정류장, 인접 건물 등에 따라 소음, 흡연공해